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8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법제사법위원회(2026.09.0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은 「검찰청법」의 폐지 및 「공소청법」의 제정을 고려하여 관련된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찰(청)’을 그 조문의 성격에 따라 ‘공소청’,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변경하고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위원)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검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원·검찰청·경찰관서”를 “법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경찰관서”로 한다.

제87조 중 “경찰관서”를 “경찰서등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11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u>공소</u> <u>청, 중대범죄수사청</u> ----- -----.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_____ _____ ----- <u>공소청, 중대범죄수</u> <u>사청</u> ----- -----.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u>검찰청</u>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 _____ _____ -----.
	1. ----- <u>공소청(광역공소</u> <u>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u> <u>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u>법원·검찰청·경찰관서</u>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③ (생략) 제87조(유치장) <u>경찰관서</u>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u>검찰청</u>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 ---- <u>법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경찰관서</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유치장) <u>경찰서등 수사기관</u>-----.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 ----- ----- <u>공소청</u> -----.
---	--